

## 토지수용 재결관련 업무담당자 안내

토지수용 재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구분하여 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o 보상금 수령, 공탁, 권리 설정된 관계인 지분 확인 등은 아래 담당자 문의

사 업 명	사업시행자	담당자 연락처
담양산단 진입도로	전라남도지사	한국감정원 정덕호 062-372-1256
목포의료원~국도1호선간 도로개설	목포시장	건설과 조은정 061-270-3535
대성사랑으로~석현초교간 도로개설	"	건설과 조은정 061-270-3535
목포 유달산 주차장 조성사업	"	교통행정과 방경만 061-270-3369
덕연동(명말지구) 소재지 종합정비사업	순천시장	건축과 황승권 061-749-5948
덕곡소하천 정비사업	나주시장	안전총괄과 박형규 061-339-7868
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(선도지구)	광양시장	도시과 김종경 061-797-2842
봉림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	보성군수	안전건설과 최욱 061-850-5552
해남군관리계획(공공청사) 사업	해남군수	재무과 강아영 061-530-5276
남악신도시 남악지구 배수지 증설공사	무안군수	상하수도사업소 조성우 061-450-4113
삼원빌라~대신마을 도로개설공사	영광군수	건설도시과 정종국 061-350-5432
대신지구 외곽도로(신진카~삼원빌라) 개설공사	"	건설도시과 정종국 061-350-5432
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	진도군수	지역개발과 박범준 061-540-3856
하조도~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	"	수산지원과 정병락 061-540-3589
덕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	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	강진지사 윤영구 061-430-7751
미학지구 배수개선사업	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	해남지사 이관현 061-530-1540
2015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(재해대비)	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	영암지사 문경수 061-470-5542
2015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(대안지구)	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	영광지사 신지혜 061-350-6584
매항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	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	진도지사 조문원 061-540-5475
진도대명리조트관광단지조성사업	(주)대명레저산업	보상팀 박정현 031-686-9092

o 도청 토지수용 담당자(재결내용에 관한 문의) 김경훈 061-286-7325

# 재 결 서

수용재결 : 하조도~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

2017. 12. 22.



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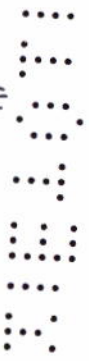
# 재 결 서

사 업 명 : 하조도~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  
 사업시행자 : 진도군수  
 소 유 자 : 박운거 등 8명  
 관 계 인 : 박봉화 등 3명  
 재 결 일 : 2017. 12. 22.

이 건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.

## 주 문

1.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,2목록 기재 물건을 수용하고, 손실보상금은 금30,607,150원으로 한다.
2. 수용의 개시일은 2018. 2. 8.로 한다.



## 이 유

### 1.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

#### 가. 경위

사업시행자 진도군수는 하조도~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한다)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. 9. 21.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의견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.

그리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계법”이라 한다)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받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(진도군 고시 제2016-48호, 2016. 10. 20., 같은 고시 제2017-17호, 2017. 4. 11.) 하였

으며, 사업시행자가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, 소유자 사망, 소유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에 이르렀다.

나. 적법성

「국계법」 제95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·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제96조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에는 「토지보상법」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.

따라서, 위 재결신청 경위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볼 때 이 건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.

2. 당사자 주장

가. 소유자 등의 주장

「토지보상법」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.

3. 위원회 판단

가. 거소불명 사항에 대하여는

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·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 대하여 진도군수가 「토지보상법」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(진도군 공고 제2017-484호, 2017.10.25.)

를 하였으므로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#### 나. 손실 보상금에 대하여는

토지에 대한 보상은 「토지보상법」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,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,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, 생산자 물가상승률, 그 밖에 당해 토지 등의 위치, 형상, 환경,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

물건에 대한 보상은 「토지보상법」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,

수목은 수종, 규격, 수량, 식수면적, 관리상태, 수익성,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하되, 이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식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
우리 위원회는 「토지보상법」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에 따라, **손실보상금으로 금30,607,150원** (개인별 보상내역은 별지 제1,2목록 기재와 같이 함)을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.

#### 4. 수용의 개시일

수용의 개시일은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018. 2. 8.로 한다.

# 별지 1 - 보상액 내역(토지)

## 【사업명: 하조도-나배도 연도교 건설공사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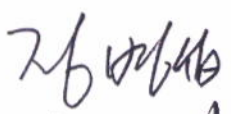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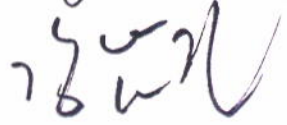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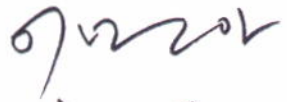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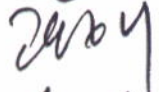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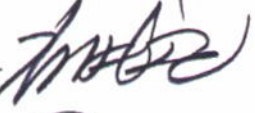

(단위: 원)

연번	수용토지의 표시				보상액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	
	소재지	지번	지목		면적 (㎡)	단가	금액	주소	성명	주소	성명		권리종류
합계		17필지			10,002		25,477,150		11명				
1	조도면 창유리	산299-1	임야	임야	772	3,300	2,547,600						
2	조도면 창유리	산299-2	임야	임야	403	3,300	1,329,900					미등기 (박동희)	
3	조도면 창유리	1392-1	전	전	969	3,600	3,488,400	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1415	박운거				
4	조도면 창유리	1392-2	전	전	918	5,150	4,727,700						
5	조도면 창유리	산293-11	임야	임야	1514	2,500	3,785,000	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1415	박주림				
6	조도면 창유리	산293-9	임야	임야	333	2,550	849,150						
7	조도면 창유리	산300	임야	임야	793	2,500	1,982,500	진도군 조도면 관배도리	미등기 (한경구)				
8	조도면 나배도리	19	전	전	175	3,950	673,750	진도군 조도면 나배도리 33	박종연				
9	조도면 나배도리	27-1	전	전	57	4,250	242,250	진도군 조도면 나배도리 107	이미자				
10	조도면 나배도리	산5-1	임야	임야	644	1,350	869,400	진도군 조도면 나배도리 40	한동엽				
11	조도면 나배도리	산5-2	임야	임야	207	1,350	279,450						

12	조도면 나배도리	26	전	전	79	4,600	363,400		이등기 (한복동)				
13	조도면 나배도리	신8-2	임야	임야	467	1,350	630,450						
14	조도면 나배도리	신8-3	임야	임야	2561	1,350	3,457,350	진도군 조도면 나배도리 106	한상주				
15	조도면 나배도리	신8-1	임야	임야	60	1,250	75,000						
16	조도면 나배도리	20-1	전	전	33	3,500	115,500	진도군 조도면 나배도리 122	한항규				
17	조도면 나배도리	11-1	전	전	17	3,550	60,350	진도군 조도면 나배도리 43	한승연				



#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

위원장	정병섭	
직무대행	강남진	
위원	박인출	
위원	이민아	
위원	한소영	
위원	고은혜	
위원	김병곤	
위원	오진영	

⋯  
⋯  
⋯  
⋯  
⋯  
⋯  
⋯

위 정보입니다.

2017. 12. 22.

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



간사 김홍

